

## ■ 업무내용

조경식재 : 조경수목 ·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· 관리하는 공사

조경시설물설치공사 :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· 인조목 ·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· 퍼걸러 등의  
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

## ■ 등록기준

### 1. 자본금

| 법인       | 개인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1.5억원 이상 | 1.5억원 이상 |

### 2. 기술능력

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
| 조경식재공사    |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<br>가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<br>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|
| 조경시설물설치공사 |  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기술사  | 용접, 건축시공, 조경, 종자, 시설원예, 산림   |
| 기능장  | 용접,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, 산림   |
| 기사   | 용접, 콘크리트, 조경, 종자, 시설원예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   |
| 산업기사 | 굴착기, 용접, 석공, 토목제도, 콘크리트, 건축목공, 건축일반시공, 조경, 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목공예   |
| 기능사  | 굴착기운전, 피복아크용접, 특수용접, 가스텡스텐아크용접,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, 석공, 전산응용토목제도, 콘크리트, 거푸집, 건축목공, 미장, 조적, 조경, 종자, 원예, 산림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목공예, 석공예 |
| 기능사보 | 특수용접, 가스용접, 전기용접, 석공, 콘크리트, 거푸집, 건축목공, 미장, 조적, 조경, 원예종묘, 과수재배, 화훼재배, 영림, 목공예   |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### 3. 공제조합

2024.07.29 기준

| 업종               | 1좌당      | 자본금   | CC등급 이상               | C등급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경식재 · 시설물공사업    | 947,723원 | 1.5억원 | 43좌<br>(40,752,089 원) | 53좌<br>(50,229,319 원) |
| ※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4. 시설 · 장비

| 사무실   |
|---|
| 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 |
| 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             |

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